성주군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11년 6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「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」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공인의 글자 양식을 한글 전서체에서 한글로 바꾸고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공인의 글씨를 한글 전서체에서 한글로 변경(안 제5조)

나. “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” 는 문구 추가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」 제55조

나. 예산관련사항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.

다. 기 타 :

(1) 개정조례안 : 붙임

(2) 신・구조문대비표 : 별첨

(3) 입법예고(2011. 3. 31 ~ 4. 20)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.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 중 “한글 전서체”를 “한글”로, “새기되”를 “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공인의 글자 변경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「성주군공인조례」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신조하거나 개각하는 공인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공인의 글씨 및 규격)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명칭에 “인” 또는 “의인” 자를 붙이며, 그 규격은[별표 3]과 같다.	제5조(공인의 글씨 및 규격) ---------- 한글----------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----------.